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2
----------	-----

2014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20일, 장우윤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 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우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역교육복지센터를 규정함(안 제6조).
-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교육복지 협력사업에 대한 운영점검과 성과관리를 규정함(안 제9조).
- 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교육복지 기관 인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지역 자원을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교육복지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관협력의 개념

- 민관협력이란 지금까지 행정주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했던 공적 서비스업무를 행정주체와 민간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영역으로 민간위탁, 민영화, 민간자금도입, 산학협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때의 민간은 기업, 학계, 산업계, NGO 등 공공부문 이외의 모든 대상을 포함함. 특히 다른 행정영역보다 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관협력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정체, 복지자원의 통합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그 요구가 높다 하겠음.
- 따라서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민관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지역단위협력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음.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면 동 조례안이 민관협력의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관협력의 개념 및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 지역단위 협력체계의 필요성

- 오늘날의 교육복지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상의 교육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수준이상의 교육결과에까지 적극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임. 특히, 낮은 학습 성취의 아동이나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와 다문화 사회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것임.

- 동 조례안이 규정한 “지역기반사업” 과 같은 교육복지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 단체 등 해당지역에 기반한 지역내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라. 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6조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감이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역기반 협력사업자들과 연계하여 지역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교육복지사업 시행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관협력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센터 운영에 있어 지차구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겠음.
- 조례안 제10조는 기부금 및 현물 기부의 배부에도 여건이 어려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일관된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기부자에게 기부금품 기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향후 교육청의 교육기부 및 교육복지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마. 종합의견

- 오늘날의 교육과 복지라는 융합적 교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시대적 관점에서 동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한계로 인한 교육소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교육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사료됨. 다만, 민간주도의 지역기반사업이나,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의 경우 철저한 사후평가 등을 통한 피드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청 사업의 대부분이 교육복지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산소요액의 발생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교육복지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만큼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민간부분과의 협력체계를 공공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역대 정부별 교육복지 사업 개관>

역대 정부	주요 사업 내용
김영삼 정부 1993.2-19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복지 관련 사업 및 단일 정책 없음 - 1995년 5·31교육개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일부 관심이 표현됨 - 1997년 교육복지 종합대책 발표
김대중 정부 1998.2-20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교육복지 정책에 관심 표명하기 시작 -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안 -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만 5세아 무상교육실시(1999)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실시(2000)
노무현 정부 2003.2-20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 - 2004년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시작(2003), 방과후 학교사업(2006) 지역아동센터(2004), 희망스타트(2007: 차후 드림스타트), CYS-Net(200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005), 돌봄교실(2004년에는 방과후 교실, 2009년 초등돌봄교실)
이명박 정부 2008.2-20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확대가 국정전략 -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마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 초등돌봄교실(2010: 2011), Wee프로젝트(2008),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2009),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창의경영학교(2009), 전원학교사업(2009),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2011), CYS-Net,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박근혜 정부 2013.2-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3대 중점 추진과제(우선배려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소득수준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선정 -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복지 주력 -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 국정 전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2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효과증진 방안을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컨설팅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교육감이 자원 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 를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프로그램” 을 “교육감은 프로그램” 으로 하고, “교육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이에 협조할 수 있다.” 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를 “자원 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1조(프로그램 기부)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한다.</u></p> <p>③ <u>프로그램</u>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u>교육감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 ⑤ (생략)</p>	<p>제11조(프로그램 기부) ① (원안과 같음)</p>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u>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u></p> <p>③ <u>교육감은 프로그램</u>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u>이에 협조할 수 있다.</u></p> <p>④ ~ ⑤ (원안과 같음)</p>
<p>제12조(자원봉사)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u>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알선하여야 한다.</u></p> <p>③ ~ ⑥ (생략)</p>	<p>제12조(자원봉사) ① (원안과 같음)</p> <p>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u>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u></p> <p>③ ~ ⑥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의 교육복지 협력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이나 실적관리를 위한 인력의 배치·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기반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이하 “지역기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며 협력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복지 담당 직원
2.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각급학교의 장
4. 교육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기반사업 및 센터 협력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협력사업자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 교육감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 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부금 및 현물 기부) ① 민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건이 어려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기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자료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부자에게 기부금품 기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기부) ① 민간이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대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 ① 교육감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교육복지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복지 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 인증을 할 경우 인적 구성, 시설 구비, 프로

그럼 운영, 비영리성 등의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감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증기관이 기준에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표창 및 표식)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 및 사회공헌기관에게 표창이나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표창 등”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표창 등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교육복지 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복지 공헌자 추천 및 심사, 결정 및 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협조 요청)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를 비롯한 다른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위임)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